평창군 시설관리공단 경영개선명령 이행 계획 보고

의 안 번 호	546

제안연월일 : 2026. 3. .
제 안 자 : 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○ 2025년 지방공기업 경영진단 결과로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이 경영개선 명령을 통보받아, **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6에 따라 평창군의회에 보고**

경영진단 선정사유

ㅇ 2025년 경영평가 결과(24년 실적) : “라” 등급(평점 79.93점)
ㅇ 주요내용
- 시군시설공단 유형 23개 기관 중 22위로 경영관리 전반 저조
- 조직인사관리(76.00점), 안전 및 환경(68.40점) 등 경영관리 세부지표 미흡
- 대행사업비 증가(18.50%↑), 사업수지비율 감소(5.02%p↓) 등 경영효율성과 저조

2. 주요내용

○ 2025년 지방공기업 경영진단 및 이행사항
- 행정안전부 2025년도(24년 실적) **평창군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 결과('라' 등급)에 따라 경영진단 대상기관**에 선정
-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결과 미흡한 부분 등을 중심으로 **개선(안) 도출을 위한 경영진단 실시**
- **경영진단 결과로 평창군 시설관리공단에 경영개선명령 3건, 권고 3건 통보(2025. 12. 29.)**

○ **경영개선명령(3건)**

① 주요 경영현안 해결을 위한 임시조직(TF) 운영체계 강화

② 성능평가 기반의 시설물 유지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

③ 사업수입 부진원인 분석을 통한 수익 제고 방안 마련

○ **권고 사항(3건)**

① 혁신과제 발굴 관련 프로세스 개선 및 지원제도 도입

② 시설물 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 및 제도적 기반 강화

③ 회계관리 전문성 및 통제 강화

3. 경영개선명령 세부 내용 및 이행 계획

① 주요 경영현안 해결을 위한 임시조직(TF) 운영체계 강화(~'26.6.)

<주요내용>

○ 신규사업 수탁 등 주요 경영현안 대응을 위한 임시조직(TF) 운영의 체계성·효과성 미흡

○ 임시조직 설치·운영·평가·해산 전 과정에 대한 제도적 근거 부재로 성과관리 한계

○ 참여 직원 동기부여 및 성과 인정 체계 미비로 적극적 참여 유도 곤란

○ 지자체와의 공식 협의 창구로서 대표성 확보 어려움으로 심도 있는 사전협의 저해

○ **이행계획(개선방향)**

- 임시조직 운영 규정 신설로 전 과정 제도화
- BSC(균형성과표) 기반 성과평가 체계와 연계하여 TF 활동 성과의 평가·환류 근거 마련(규정·지침 반영)
- 반복 과업(시설 수탁 등) 표준운영절차(SOP) 수립 및 지식자산화(템플릿·체크리스트)
- 신규 위수탁 사업 추진 시 TF를 지자체 공식 실무협의 채널로 격상하여 사전협의 실효성 확보

② 성능평가 기반의 시설물 유지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(~'26.12.)

<주요내용>

ㅇ 수탁시설 9개 중 절반 이상이 2010년 이전 준공으로 노후화 심각 (예: 평창장례식장 1998, 대관령휴게소 2008)

ㅇ 성능평가 중심의 효율적 시설물 유지관리 체계 미구축 및 구체적 추진과제 부재

ㅇ 안전감사팀 내 전담인력 1명으로 총괄 역할 수행 한계

ㅇ 시설물 유지관리 전략 체계도의 목표-전략-과제 연결고리 취약 및 추상적 기술

ㅇ 이행계획(개선방향)

- 시설물 정보관리시스템(JUMP) 정비(DB 현행화)
- 유지관리 필요 기본 자료 수집 및 성능평가 기반 5개년 유지관리 계획 수립
- ISO 41001(시설관리 경영시스템) 인증 컨설팅 및 인증서 취득

③ 사업수입 부진원인 분석을 통한 수익 제고방안 마련(~'26.12.)

<주요내용>

ㅇ 캠핑장·휴양림·광천선굴 등 관광시설 사업수입 개선 노력 미흡

ㅇ 마케팅비용(연 3~7백만원) 지출 대비 이용객 증가와의 연계성 미확인

ㅇ 이용 후기 분석 결과, 편의시설(샤워실·개수대 등) 노후화 및 부족에 대한 불만 다수

ㅇ 사업수지비율 전년 대비 감소(66.93% → 61.91%, 5.02%p↓)

ㅇ 이행계획(개선방향)

- VOC(고객의소리)·후기·예약데이터 기반 수요층 세분화(가족·반려동물·힐링·체험·캠핑입문 등) 및 타겟 마케팅 전환
- 계절성 극복을 위한 사계절 체험 프로그램 개발
- 만족도·재방문율에 직접 영향을 주는 편의시설을 우선순위로 개선
- 기존 마케팅비 지출의 ROI(투자수익률) 분석 후 비효율 홍보비를 시설개선 투자로 전환

4. 권고사항 세부 내용 및 이행 계획

① 혁신과제 발굴 관련 프로세스 개선 및 지원제도 도입(~'26.6.)

<주요내용>

ㅇ 경영혁신 활동이 전사적 성과·전략목표와 연계되지 못하고 부서 단위로 분절적 운영

ㅇ 혁신과제 선정 시 KPI(핵심성과지표) 기여도·실행가능성 등 전략적 분석 기준 미흡

ㅇ 혁신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·자원지원 체계 부재로 직원 참여 동기 부족

ㅇ 이행계획(개선방향)

- 혁신과제 발굴·선정 프로세스 개편(안) 마련
- 혁신제안 운영지침 개정(인센티브·예산지원 근거 반영)
- 개정 지침에 따른 혁신과제 운영 및 성과평가·환류

② 시설물 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 및 제도적 기반 강화(~'26.12.)

<주요내용>

ㅇ 시설물 유지관리 교육훈련이 정량 목표(이수시간·만족도) 달성에 치중, 실질적 전문역량 강화 미흡

ㅇ 인사규정 내 자격가점 평정에 안전·시설관리 관련 자격증 미포함

ㅇ 이행계획(개선방향)

- 시설관리 직무역량 분석 결과를 반영한 연간 전문교육 계획 수립 (교육 시행 및 성과 환료)
- 인사규정 시행내규 개정(안) 마련

③ 회계관리 전문성 및 통제 강화(~'26.12.)

<주요내용>

ㅇ 회계·결산업무가 담당자 1명에 집중, 상호 검증 인력 부재

ㅇ 소규모 조직 특성상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은 현실적 한계 → 담당자 전문성 제고 우선

○ **이행계획(개선방향)**

- 예산·회계 프로세스 표준서식·체크리스트 정비
- 회계 담당자 전문교육 이수 (지방공기업 회계실무·결산·감사 대응 등)
- 결산 사전점검 및 환류

5. 향후계획

○ 경영개선명령 개선과제 추진상황 점검: 2026. 3. ~

붙임 1.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기본현황 1부.
2. 관계법령 발췌 1부.

붙임 1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기본현황

□ 설립일 : 2021. 4. 1.

□ 조직 및 인력

○ 조 직 : 5팀(전략경영팀, 안전감사팀, 관광사업팀, 복지사업팀,임대사업팀)

○ 정·현원 (단위 : 명, 2025. 12. 31.기준)

구분	계			임원	일반직	기능직	무기계약직	기간제 근로자	기타
	계	정규직	비정규직						
정원	50	50	-	1	19	-	30	-	-
현원	57	44	13	1	18	-	25	13	-

□ 주요사업

구 분	주요 사업내용	
관광사업 (6)	❍ 평창자연휴양림 관리운영 ❍ 계방산오토캠핑장 관리운영 ❍ 광천선굴어드벤쳐테마파크 관리운영	❍ 평창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❍ 평창 치유의 숲 관리운영 ❍ 목재문화체험장 관리운영
복지사업 (3)	❍ 평창군 공설묘원 관리운영	❍ 평창·진부 장례식장 관리운영
임대사업 (4)	❍ (구)대관령휴게소 관리운영 ❍ 행복주택 관리 운영	❍ 진부전통시장 주차타워 관리 운영 ❍ 청성골프연습장 관리 운영
기타사업 (1)	❍ 종량제봉투 제작·판매	
위·수탁 예정시설 (3)	❍ 대화목욕탕 ('26.7월) ❍ 평창 에코랜드 ('26.7월) ※ 평창군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 후 위·수탁 추진	❍ 평창 물환경체험센터 ('26.7월)

붙임 2 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공기업법

제78조의2(경영진단 및 경영 개선 명령)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경영진단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,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해당 지방공기업의 임원의 해임, 조직의 개편 등 경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라 명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,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78조의6(주민 등의 의견청취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2.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제78조의2에 따른 경영 개선 명령을 받거나, 제78조의3에 따른 해산 요구를 받은 때

□ 지방공기업법 시행령

제76조의2(주민 등의 의견청취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8조의6제1항 제1호의 사유로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제47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. 이 경우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기 전에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리 공개하고 그 사본을 주민자치센터 등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8조의6제1항제2호의 사유로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경영 개선 명령을 받은 날 또는 해산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개최예정일 15일 이전에 개최목적, 개최예정일, 개최장소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.